

1. 개정이유

다양화·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를 국가자격으로 발급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5887호, 시행 2020.12.12.)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내용, 보수교육 기준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 도입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서 서식을 등급별·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로 각각 구분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등급별·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으로 각각 구분하며, 재발급 신청서식에 영역별 항목을 추가함(안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 나.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 수련기관 지정 기준 및 수련과정을 정하고, 수련과정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별표 1의3)
- 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영역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1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수련지도자로서 1인 이상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단, 정신의료기관은 제외)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수련지도자로서 1인

이상 상시 근무하는 학교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의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기관, 전담부서 및 수련과정 등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 전환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수련기관에서 같은 조 제2항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자는 제4조의2제2항의 수련과정 중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로 지정하는 수련기관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하는 수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는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의한 수련지도자로 본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기간은 규칙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수련지도자 자격기준이 되는 실무경험의 기간으로 본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제4조의2제2항 관련)

영역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시간	과목	시간
	합계	1,000	합계	1,000
이론	소계	150	소계	150
	법과 정책	15	법과 정책	조정중
	임상 윤리	15	윤리와 철학	
	이론 및 실제	85	학교사회복지 실제	
	조사 연구	15	기획 및 행정	
	기획 및 행정	20		
실습	소계	830	소계	830
	법과 정책	20	법과 정책	조정중
	임상 윤리	20	실천 윤리	
	이론 및 실제	750	학교사회복지 실제	
	조사 연구	20	기획 및 행정	
	기획 및 행정	20		
학술활동	-	20	-	20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3cm X4cm (반명함판)		
	자택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우편물 수령: []자택 []직장 []직접수령				
	직장명					
	직장 주소					
신청구분	[]신규	[]승급	신청등급	[]1급 []2급		
최종학력	구분	기간	학교명	전공명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 . .]부터 [. . .]까지				
사회복지 법정 교과목 이수여부	교과목이수학교	[] 대학원(석·박사)	[] 대학	[] 전문대학	[] 평가인정 학습과정	[] 기타()
	필수 교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 교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간	실습기관	기관실습 지도자	실습세미나 교수		
	[. . .]부터 [. . .]까지					

1.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확인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써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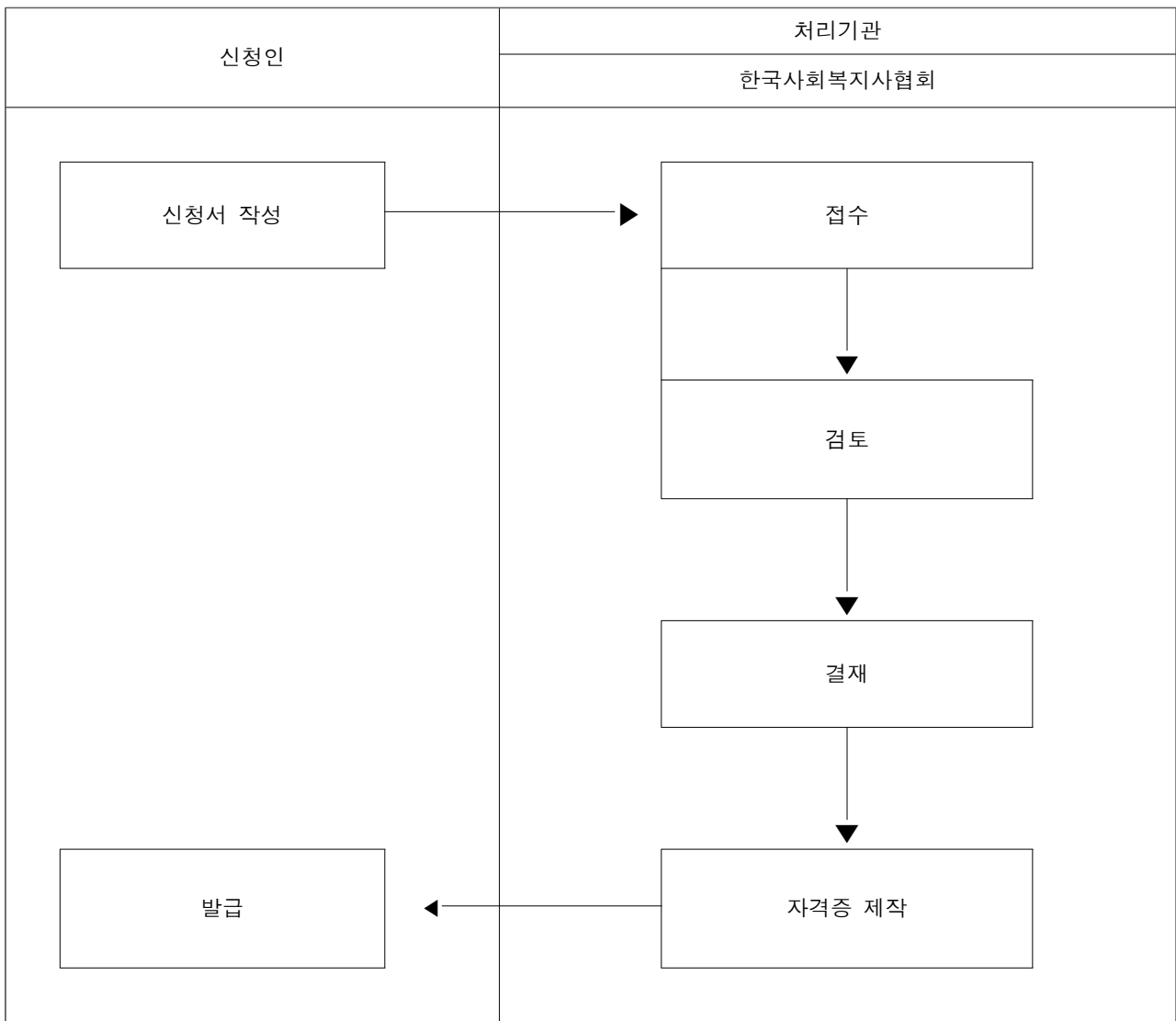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cm×4cm) 2장	수수료 1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3cm ×4cm (반명함판)	
	자택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직장명		우편물 수령:[]자택 []직장 []직접수령				
	직장 주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번호		제 - 호		
신청영역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영역별 사회 복지사 수련	기간	수련기관	수련지도자				
			성명	사회복지사 1급 자격번호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1.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확인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사 회 복 지 사 협 회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cm×4cm) 2장	수수료 1만원
기타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자격증 제작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3cm ×4cm (반명함판)
	자택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우편물 수령:[]자택 []직장 []직접수령	
	직장명		
	직장 주소		
	신청등급 또는 신청영역	[] 1급 [] 의료사회복지사	[] 2급 []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번호	제 - 호	발급연월일	. . .
-------	-------	-------	-------

재발급 신청사유	[] 분 실 []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성명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그 밖의 사유()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
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 국 사 회 복 지 사 협 회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장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이름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사진 1장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사진 1장 3.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 류, 사진 1장	수수료: 1 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경 우) 주민등록증 대조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에만 해당함)

본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자격증 제작	→	발급
--------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 호

사회복지사 자격증

○ 성 명 :

○ 생년월일 :

○ 등 급 : 급

사 진
3cm × 4cm
(반명함판)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 비고: 1. 자격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제 호

사회복지사 자격증

○ 성 명 :

○ 생년월일 :

○ 영 역 :

사 진
3cm × 4cm
(반명함판)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 비고: 1. 자격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12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 신청등)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u>사회복지사자격증</u>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 신청등) ①----- ----- ----- ----- ----- <u>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u> 발급 신청서 또는 <u>별지 제1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u> ----- ----- -----.
1. 삭 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u>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u> 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u>별지 제4호서식</u> 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 ----- ----- <u>별지 제4호서식</u> 또는 <u>별지 제4호의2서식</u>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1</u>

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수련지도자로서 1인 이상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단, 정신의료기관은 제외)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수련지도자로서 1인 이상 상시 근무하는 학교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의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은 별표1의3과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

<u>제4조의2</u>·<u>제4조의3</u> (생략)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①·③ (생략) <u><신설></u> ④ ~ ⑦ (생략) ⑧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u>사회복지시설</u>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u>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기관, 전담부서 및 수련과정 등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u>제4조의3</u>·<u>제4조의4</u> (현행 제4조의2 및 제4조의3과 같음)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과 같음) ⑨ ----- -- <u>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학교</u>----- -----.
--	--